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칙





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, 055-250-3074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 정관 제7조와 제9조의 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 하부조직과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관련업무의 처리) 업무가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할 부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 <개정 2018.12.1.>

- 제3조(단장)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<개 정 2023.3.8.>
 - ② 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 <개정 2018.12.1.>
- 제4조(부단장) ① 단장밑에 부단장 1인을 둘 수 있다.
 - ②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 <개정 2018.12.1.>
- 제5조(하부조직) ① 산학협력단은 정관 제7조에 따라 하부조직으로 연구사업단, 학교기업,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 다. <개정 2018.12.1.>
 - ② 각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1.>
- **제6조(업무)** ①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12.1.>
 - 1. 산학협력 업무 총괄·조정
 - 2. 산학협력단의 실적·성과의 평가
 - 3. 운영위원회 운영
 - 4.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
 - 5.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
 - 6. 산학협력 계약학과에 대한 지원사업
 - 7.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에 관한 업무
 - 8.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
 - 9. 산학협력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 - 10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 - 11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 - 12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 - 13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
 - 14.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상호협력활동 및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
 - 15. 대학의 교지 및 산업기술단지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
 - 16. 가족회사(family doctor) 운영에 관한 업무
 - 17. 학교기업운영에 관한 업무
 - 18. 부설연구소의운영에 관한 업무
 - 19.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 - ② 제1항 각호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8.12.1.>

제7조 <삭제 2018.12.1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

-1/2-



장이 된다. <개정 2018.12.1.>

- ②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9.11.12.>
- ③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간사는 산학협력단의 직원 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24.4.29.>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
- 2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시행을 위한 세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(결의) 2/3이상의 참석의 과반수 이상 조건으로 결의한다. <신설 2018.12.1.>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12조(의사정족수) <삭제 2024.4.29.>

제13조(위원회의 소집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3017호, 2023. 3. 8.>

이 규칙은 202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24000호, 2024. 4. 29.>

이 규칙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